##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 (약칭: 농어업인삶의질법)



[시행 2024. 12. 20.] [법률 제20579호, 2024. 12. 20., 일부개정]

농림축산식품부 (농촌정책과) 044-201-1518, 1519 해양수산부 (소득복지과) 044-200-5462, 5461

제1장 총칙 <개정 2010. 7. 23.>

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산림기본법」, 「해양수산발전 기본법」 및 「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법」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,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・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6. 22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2조(기본이념)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,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-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. 6. 22., 2018. 12. 31., 2020. 12. 8.>
  - 1. "농어촌"이란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5호와「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
  - 2. "농어업"이란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「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.
  - 3. "농어업인등"이란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「수산업・어촌발전 기본법」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.
  - 4. "농어촌학교"란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 및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.
  - 5. "공공서비스"란 주거·교통·교육·보건의료·복지·문화·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  - 6. "농어촌서비스기준"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,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·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한다. <개정 2024. 1. 2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<개정 2010. 7. 23.>

제5조(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, 농어촌의 교육 · 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야 한다. <개정 2013. 6. 12., 2020. 2. 11., 2024. 1. 2.>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,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
- 2.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
- 2의2.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- 3. 농어촌의 교육 문화예술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- 4.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- 4의2.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- 5.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
- 6.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
- 7.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
- 8.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
- 9.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
- 10.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
-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- **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)**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- 제6조의2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) ① 정부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 거나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·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[본조신설 2018. 9. 18.]
- 제7조(시・도계획 및 시・군・구계획의 수립) ① 시・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(이하 "시・도계획"이라 한다)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8. 9. 18.>
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은 시·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·군·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(이하 "시·군·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각각의 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, 민간단체,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·도 및 시·군·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. 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8조(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)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6. 12., 2024. 1. 2.>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
- 2. 농어업인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
- 3. 고령 농어업인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
- 4. 농어촌의 교육・문화예술 여건
- 5. 농어촌의 교통・통신・환경・기초생활 여건
- 6.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・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**제9조(기본계획 등의 평가)**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 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<신설 2019. 8. 27.>
  - ③ 제10조의2에 따른 시·도 및 시·군·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 8. 27.>
 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.<개정 2019. 8. 27.>
  - 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점검·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.<신설 2019. 8. 27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- 제9조의2(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)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점검과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도 개선 및 예산 조정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
  -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11. 30.]

- 제10조(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)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,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9. 8. 27.>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신설 2019. 8. 27., 2021. 11. 30.>
  - 1. 기본계획
  - 2.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 평가 결과
  - 3. 해당 연도 시행계획
  - 3의2.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
- 5.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9. 8. 27.>
-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9. 8. 27.>
- 1. 기획재정부장관・교육부장관・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・행정안전부장관・문화체육관광부장관・농림축산식품 부장관・산업통상자원부장관・보건복지부장관・환경부장관・고용노동부장관・여성가족부장관・국토교통부장 관・해양수산부장관・중소벤처기업부장관・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
- 2.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·교육·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개정 2019. 8. 27.>
-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,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.<개정 2013. 3. 23., 2019. 8. 27.>
-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19. 8. 27.>
-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13. 3. 23., 2019. 8. 27.>
- 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·기능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9. 8. 27.>

- 제10조의2(시・도 및 시・군・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) ① 시・도계획 및 시・군・구계획의 수립・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, 그 추진실적을 점검・평가하기 위하여 시・도지사 소속으로 시・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(이하 "시・도 위원회"라 한다)를, 시장・군수・구청장 소속으로 시・군・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(이하 "시・군・구위원회"라한다)를 각각 둔다. 다만, 시・도 위원회 또는 시・군・구위원회를 설치・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15조에 따른 농업・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「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수산업・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, 2015. 6. 22.>
  - ② 시·도 위원회 및 시·군·구 위원회의 구성,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0. 7. 23.]

제11조(재정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, 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<개정 2010. 7. 23.>

제12조(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**제13조(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)**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4조(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・치료 등 지원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・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6. 12.>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 6. 12.>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 6. 12.>
 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2013. 6. 12.>
  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13. 6. 12.> [전문개정 2010. 7. 23.]
- 제15조(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)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·질병·신체장애·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·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,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.
  -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·질병·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·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「보험업법」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보지 아니한다.<신설 2012. 12. 18.>

제15조의2(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,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 안전보건센터를 설치 ·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0. 7. 23.]

**제16조(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)**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17조(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17조의2(농어촌 지역 아동・청소년・청년에 대한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・청소년・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2. 20.>

[본조신설 2013. 6. 12.] [제목개정 2024. 12. 20.]

제18조(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,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 · 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18조의2(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)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6. 12.>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[본조신설 2010. 7. 23.]

제19조(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(高齡) 농어업인[농어업의 경영을 이양(移讓)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]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6. 12.>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[제목개정 2013. 6. 12.]

제19조의2(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) 지방자치단체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「농업협동조합법」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 12. 2.]

[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<2016. 12. 2.>]

- 제19조의3(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 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18., 2017. 10. 31.>
  -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(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)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신설 2017. 10. 31.>

[본조신설 2010. 7. 23.]

[제목개정 2014. 3. 18.]

[제19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<2016, 12, 2,>1

- 제19조의4(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「민법」상 법인·조합,「상법」상 회사,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, 지원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3. 3. 23.>

[본조신설 2010. 7. 23.]

[제19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<2016. 12. 2.>]

- 제19조의5(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)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(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)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「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70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6. 22., 2020. 2. 11.>
  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0. 7. 23.]

[제19조의4에서 이동 <2016. 12. 2.>]

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<개정 2010. 7. 23.>

**제20조(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- 제21조(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0. 22, 2013. 6. 12.>
  - 1.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(이하 "교육과정"이라 한다)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 촌학교 육성
  - 2.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 보급
  - 3.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
  - 4.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신설 2012. 10. 22.>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신설 2017. 10. 31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[제목개정 2012. 10. 22.]

- 제22조(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·보호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- 제23조(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, 수업료,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31.>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2018. 12. 31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- **제24조(농업 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25조(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·배치)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- 제26조(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,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,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27조(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)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,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(시·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)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. <개정 2018. 9. 18.>
  -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8. 9. 18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- 제28조(농어촌학교의 시설·설비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·설비 및 교구(敎具)를 우선 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- 제28조의2(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(「평생교육법」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말한다)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3. 6. 12.]

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<개정 2010. 7. 23.>

- 제29조(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,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6. 12.>
  - 1. 「농어촌정비법」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
  - 2. 「농어촌정비법」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
  - 3. 「수도법」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
  - 4.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
  - 5.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
  - 6.「하수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「농어촌정비법」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·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
  - 7. 「폐기물관리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

7의2.「석면안전관리법」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

- 8.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도시가스사업법」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12. 31.>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12. 31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- **제30조(농어촌 경관의 보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  - ②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제30조의2(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·활용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·사회·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·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・군수"라 한다)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.
 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손상되어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
  - 2. 시장·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지역이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
  - 3. 시장・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  - 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④ 시장·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대상, 기준, 절차와 지정의 변경·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 2. 3.]

- 제30조의3(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·활용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·사회·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·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농림축산식품부장관"은 "해양수산부장관"으로, "국가중요농업유산"은 "국가중요어업유산"으로, "농림축산식품부령"은 "해양수산부령"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15. 2. 3.]

- 제31조(농어촌산업 육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 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・전통문화・경관 등 유형・무형의 자원(이하 "특산물등"이라 한다)을 활용한 식품가 공 등 제조업,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(이하 "농어촌산업"이라 한다)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개정 2015. 7. 20.>
  - 1. 특산물등의 조사・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
  - 2.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
  - 3.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・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
  - 4.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
  - 5.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 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
  - 6.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
  - 7.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8.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- **제32조(농어촌의 정보화 촉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,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
  - 2.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
  - 3.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・훈련
  - 4. 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- 제32조의2(농업・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・농촌공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・저장・가공・분석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 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・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・운영・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・지방자치단체・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개정 2020, 2, 11.>
 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·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·관리·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.
  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·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·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⑤ 농업·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·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31.]

- 제33조(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 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,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·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34조(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·노인복지·문화예술공연·도서관·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35조(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35조의2(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,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「해운법」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15. 7. 20.>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2015, 7, 20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 [제목개정 2015. 7. 20.]

- 제35조의3(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「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해운법」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6. 22., 2020. 12. 8.> [전문개정 2010. 7. 23.]
- **제36조(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·청소년수련시설·교육연수시설·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·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37조(도·농교류센터의 설치·운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·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- 제38조(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(圈域)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.
  - 1. 주거환경의 개선
  - 2. 생활기반시설의 확충
  - 3.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
  - 4. 농어촌의 경관 보전
  - 5. 농어촌관광의 진흥,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
  - 6.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,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「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 워져야 한다.
 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  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- 제38조의2(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・운영) ①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 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-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1. 해당 지역 주민
- 2. 관계 공무원
- 3.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0. 7. 23.]

- 제39조(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,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·사회·문화·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.
  - 1.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
  - 2.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
  - 3. 교통・산업・보건의료・교육・복지 시설의 설치
  - 4. 환경 보전 및 조성
  - 5.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- 제40조(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·영어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소득이 낮은 농어촌(이하 "조건불리지역"이라 한다)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0 >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 보전활동, 농어촌관광,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6장 보칙 <개정 2010. 7. 23.>

제41조(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)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- 제42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)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한다. <개정 2019. 8. 27.>
  - ②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·평가 결과, 해당 연도 시행계획,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19. 8. 27.>
  - ③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·평가 결과 및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제2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<신설 2024. 1. 2.>
  -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 8. 27., 2024. 1. 2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43조(준농어촌에 대한 지원) 농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「농지법」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「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**제44조(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・운용 등)**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·운용할 수 있다.
  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-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.
  -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・도지사 및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신설 2024. 1. 2.>
  -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행계획, 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 1, 2,>
  - ⑥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24. 1. 2.>
  - ⑦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24. 1. 2.>

[본조신설 2010. 7. 23.]

- 제45조(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·사회·문화·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·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정·운용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>
 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  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·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>
  -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·평가의 방법과 절차,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 7. 25.]

- 제46조(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·공립 연구기관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10. 31., 2024. 1. 2.>
  - 1. 시행계획의 점검 평가
  - 2. 제44조제6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・분석
  - 3.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
  - 4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
 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(이하 "전문지원기관"이라 한다)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, 2017. 10. 31.>
 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지원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, 2017. 10. 31.>
  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<신설 2014. 10. 15.>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0. 15.> [본조신설 2011. 7. 25.]
- 제47조(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>
 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, 2023. 12. 26.>

[본조신설 2011. 7. 25.]

부칙 <제20579호,2024. 12. 20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